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1983.12.26 규정 제 5호	2016. 7.12 규정 제799호
개정 1990. 5. 4 규정 제 91호	2016.12.16 규정 제841호
1993.11. 9 규정 제140호	2017. 4.26 규정 제856호
1996. 1. 8 규정 제192호	2017.11. 1 규정 제918호
2002. 7.16 규정 제387호	2019. 7. 1 규정 제978호
2003.11. 7 규정 제437호	2021. 4. 1 규정 제1027호
2004. 6.11 규정 제470호	
2007. 2.23 규정 제572호(정관 부칙개정)	
2007. 4.11 규정 제574호	
2010. 7.30 규정 제659호	
2012. 1. 1 규정 제685호	
2015.10.26 규정 제7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3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와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30, 2016.12.16, 2019.7.1., 2021.4.1.)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여 현안 업무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이사 3인 이상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3.11.7, 2010.07.30, 2012.1.1, 2019.7.1.)
③ 서울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서면결의로 부의된 안건 중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본항신설 '07.4.11)
④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를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7.30, 2019.7.1.)
⑤ 의장 유고시에는 임명일 순서에 의한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와 노동이사 제외)가 직무를 대행하며,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신설 2019.7.1.> <개정 2021.4.1.>

제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 2019.7.1.>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3, 2012.1.1, 2019.7.1.>

③ 이사회 출석이사의 찬반여부 표시는 거수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사의 찬반여부를 의사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거수형식의 찬반표시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02.7.16) (개정 2012.1.1, 2015.10.26.)

제5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직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직원을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존 제3호를 제2호로 이동, 2012.1.1)
3.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4.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본호개정 '07.4.11)
5. 공단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6. 자금의 장·단기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7. 자금의 일시 차입한도액 및 차입한도 증액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8.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9.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기존 제5호를 제9호로 이동, 2012.1.1)
10.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기존 제6호를 제10호로 이동, 2012.1.1)
11.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기존 제7호를 제11호로 이동, 2012.1.1)
12. 결손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기존 제8호를 제12호로 이동, 2012.1.1)
13.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단, 이사회 의결 후 제기 또는 신청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의 소송 및 화해의 경우는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14.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15. 이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
16. 안전분야 사업의 외주화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12.16.)
17.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1)(기존 제16호를 제17호로 이동, 2016.12.16.)

제8조(의결방법의 특례) ① 의장은 이사회 부의 안건 중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 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7.4.11, '10.7.30, 2019.7.1.>

② 이사장은 재난, 사고, 분쟁대응,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1>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임이사의 안건제출) ① 비상임이사는 필요한 경우 직제규정 기구별 업무분장을 감안하여 해당안건의 소관부서에 이사회 개최 40일 이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

제11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담당이사 및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서를 제2항의 의안 배부기한 마감일 3일전까지 이사회 운영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7.16, 2010.7.30, 2015.10.26)

② 이사회 운영담당 부서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그 의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 소집 통보서와 함께 배부한다. 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기편성된 예산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거나 상급기관의 지침과 관련되는 안건은 이사회 개최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2002.7.16 본문개정, 단서신설, 개정 2010.7.30, 2015.10.26.)

제11조의2(의결권 위임)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7.16)

제11조의3(의견첨부) ① 소관부서장은 이사회에 부의하는 안건 중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의 관련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2019.7.1.)

② 소관부서장은 이사회의 서면결의로 부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필요시 제1항의 동일 서식에 따라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7.4.11)

제12조(의안설명)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당해 의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소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 개최전에 사전 의안설명을 하도록 조치한다. (2003.11.7 신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체협상의 주요쟁점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체결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다.(신설2003.11.7, 개정 2010.7.30)

④ 이사회 운영담당 부서장은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초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0.26.)

제13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사회 운영담당 부서장이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감사의 확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26.)

제14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1주일 이내에 이사회 운영부서에서 당해 의안의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5조(의사록 등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결의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부의원안은 이사회 운영담당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개정 2015.10.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의결된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관 제572호, 2007. 2.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결방법)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2007. 4.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 관련)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년 월 일	. . .	의 안 번 호	
의 제			
구 분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제 안 자

주 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 의
4. 절 차
5. 기타

<별지 제2호 서식>(제10조 관련)(개정 2010.7.30)

제 회 이사회 소집통보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시 :

2. 장소 :

3. 의안 :

의안번호	의안제목	제안자	소관부서

4. 내용 : 별첨. 끝.

년 월 일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의장

인

<별지 제3호 서식>(제12조 관련)(개정 2010.7.30, 2015.10.26)

제 회 이사회 의사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임원

(1)

(2)

(3)

(4)

4. 결석임원

(1)

(2)

5. 참석자

6. 의안번호 및 의제

7. 제안자

8. 소관부서

9. 기록자

의제

주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제 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인증함.

년 월 일

의장 (인)

이사장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위 확인함 감사 (인)

<별지 제4호 서식>(제14조 관련) (개정 2010.7.30, 2016.7.12.)

제 회 이사회 서면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장 (인)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직 위	성 명	찬성여부○기표		서 명
		찬성	불찬성	
의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직 위	성 명	찬성여부○기표		서 명
		찬성	불찬성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위 확인함 감사 (인)

<별지 제5호 서식>(제10조의 2 관련)(신설 2002.7.29) <개정 2017.11.1>

위 임 장

아래 위임인은 아래 대리인이 제 회 이사회(20)에 출석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1. 위 임 인

가. 성 명 :

나. 소속 및 직위 :

2. 대 리 인

가. 성 명 :

나. 소속 및 직위 :

3. 위임의 범위

년 월 일

위 위임인 : (인)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의 3 관련) (신설 '07.4.11)

의 견 서

제 회 이 사 회			
일 시		의안번호	
제안부서		관련부서(서울시)	
의 제			
〈제안요지〉			
〈의 견〉			